

Note: When this publication was originally published, we were known as Protection & Advocacy, Inc. (PAI). In October 2008, we changed our name from PAI to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LPS 수용에 처해지는 사람들의 법정 이용

Daniel A. Pone
수석 변호사

이 유인물에서는 Lanterman-Petris-Short(LPS) 법령 하에서 정신 병원에 수용돼야 하는 사람들이 법정을 이용하는 방법을 개설했습니다.

I. 72시간 유치 (복지 및 공공 시설법 [WIC] §§5150 이하 참조.):

- A. 인신 보호 영장 요구권 -- 72시간 유치에 의해 억류된 사람의 인신 보호 영장 요구권에 대해서는 명백한 법정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인신 보호 영장 요구권을 법정에 청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헌법상의 권리를 갖습니다. 캘리포니아 헌법 제 1항, §11; 미국 헌법 제 1항, §9, 2조. 그리고 주(州) 병원에 수용된 사람은 누구든지 인신 보호 영장 요구권에 대한 법정 권리가 있습니다. WIC §7250. 게다가, 어떤 구실에 의해서든 불법적으로 수감되거나 자유를 빼앗긴 모든 사람은 억류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인신 보호 영장 요구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1473.

주: 위의 영장 규정은 특정 억류의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정신병 환자에게 적용되며 아래에서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II. 14일 증명서 (WIC §§5250 이하 참조):

- A. 인신 보호 영장 요구권 -- WIC §§5275 이하 참조. 이 법정 영장 규정은 집중 치료를 위한 증명서에 의해 억류된 각 사람에게 그 자신이나 그를 대신하여 행하는 사람이, 신병 인도시에 증명 통지서 사본을 전달하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중 언제라도 치료 시설의 직원에게 방던시켜 주도록 요청한 다음에, 그의 방면을 위한, 인신 보호 영장 요구권에 의한 청문회에 대한 권리를 제공합니다. WIC §§5275. 법정은 청원이 접수된 뒤 사법일로 이들 이내에 영장에 관하여 증거에 의한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WIC §§5276.

- III. 자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14일간의 추가 집중 치료 (WIC §§5260 이하 참조)
 - A. 인신 보호 영장 요구권 -- WIC §§ 5275 이하 참조
- IV. 30일간의 추가 집중 치료 증명서 (WIC §§5270.10 이하 참조)
 - A. 인신 보호 영장 요구권 -- WIC §§ 5270.15(b), 5270.55(c), 5275 이하 참조
- V. 절박한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추후 증명서 (WIC §§ 5300 이하 참조)
 - A. 필수적 법정 청문회 -- 청원 접수후 사법일로 4일 이내, 배심원 재판이 요청되면 그러한 재판은 (요청한 사람의 변호사가 최대 10일 추가의 연기를 신청하지 않는 한) 청원 접수후 10일 이내에 시작돼야 합니다. WIC §§5303.
 - B. 외래 환자 지위의 취소 -- 사법일로 15일 이내의 법정 청문회. WIC §§5306.5, 5307.
 - 1. 인신 보호 영장 요구권 -- 법정이 외래 환자 지위의 취소를 결정하는 동안에 입원된 사람은 인신 보호 영장 요구권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WIC §5308 (WIC §§5275 이하에 있는 영장 규정을 통합).
- VI. 임시 보호지역 (WIC §§5352)
 - A. 일방적 법정 청문회 -- 법정은 보호지역 조사관의 보고서나 시설을 책임진 전문가 자신의 추천 이유를 밝히는 선서 진술서에 근거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임시 보호지역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WIC §5352.1.
 - B. 인신 보호 영장 요구권 -- WIC §§5353 (WIC §§5275 이하에 있는 영장 규정을 통합).
- VII. 영구 보호지역 (WIC §§5350 이하 참조)
 - A. 보호지역 확립 청원에 관한 청문회 -- 청원 접수 30일 이내에, 대상자가 중장애이고 보호지역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법정 청문회가 열려야 합니다. WIC §§ 5365. 만일 제안된 피보호자가 법정 또는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면 (그것은 5365절 청문회 후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정 또는 배심원 재판은 (법정이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연기를 승인하지 않는 한) 요구 10일 이내에 시작돼야 합니다. 만일 법정 또는 배심원 재판 요구가 5365절 청문회 전에 이루어졌다면 이 최초의 청문회는 철회됩니다. WIC §5350(d).
 - B. 확립후 이의 제기:
 - 1. 피보호자로서의 지위에 관한 재심을 위한 청원 -- 언제라도 접수될 수 있으며 6개월의 간격을 두고 후속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재판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WIC §5364.
 - 2. 피보호자에게 거절된 권리 또는 보호자에게 허가된 권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청원 -- 언제라도 접수될 수 있으며 6개월의 간격을 두고 후속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재판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WIC § 5358.3.
 - 3. 인신 보호 영장 요구권 -- 피보호자는 그의 배치나 감금 상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인신 보호 영장 요구권 청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Munson*의 피보호지역 (1978) 87 Cal.App.3d 515; 형법 §1473; WIC §7250. 그러한 청원은 보호지역이 확립된 카운티나 감금된 카운티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WIC §5358.7.